

< 일 러 두 기 >

- 법령명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기준 2.10.4 기타 식품에
대한 그 밖의 기준
- 제정일 : 2015년 4월 10일
- 최종개정일 : 2026년 4월 30일
- 출처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방문일 :2026년 4월 30일)

기준 2.10.4. 기타 식품에 대한 그 밖의 기준

참고 1 본 (법률)문서는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법 1991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1991(Cth)*)에 따른 기준이다. 본 기준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를 구성한다. 섹션 1.1.1-3을 참조한다.

참고 2 뉴질랜드에서 적용되는 코드의 규정은 식품법 2014 (*Food Act 2014(NZ)*)에 통합되거나 이에 따라 채택된다. 섹션 1.1.1-3을 참조한다.

2.10.4-1 명칭

본 기준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 기준 2.10.4 - 기타 식품에 대한 그 밖의 기준이다.

참고 시행:

본 기준의 시행일은 2016년 3월 1일이며 이 날짜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 1991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1991(Cth)*) 섹션 92에 따라 관보(*Gazette*)와 뉴질랜드 관보에 공시되어 시행일로 명시된다. 동법 섹션 93을 참조한다.

2.10.4-2 정의

참고 본 코드에서(섹션 1.1.2-3 참조)

초콜릿(chocolate)이란 다음과 같이 특징지어지는 제과류를 의미한다.

(a) 다음과 같은 내용물의 존재

(i) 코코아 콩 파생물; 그리고

(ii) 코코아 버터나 유지방을 제외하고 50g/kg 이하의 식용유; 그리고

(b) 최소 200g/kg의 카카오 콩 파생물로부터 만들어진 것

코코아(cocoa)는 지방의 일부분이 제거되었을 수도 있는 카카오 콩에 소금 혹은 양념들을 첨가하거나 하지 않고 만들어진 분말 제품을 의미한다.

커피(coffee)는 커피 콩을 볶거나, 빵거나 또는 볶고 빵아서 만들어진 제품을 의미한다.

디카페인 커피(*decaffeinated coffee*)는 대부분의 카페인이 제거된 커피를 의미한다.

디카페인 차(*decaffeinated tea*)는 대부분의 카페인이 제거된 차를 말한다.

젤라틴(*gelatine*)은 동물 가죽, 뼈 혹은 다른 아교질 물질로부터 혹은 그와 같은 물질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단백질 제품을 의미한다.

인스턴트 커피(*instant coffee*)는 커피의 수분 추출을 통해 만들어진 가용성 건조 고형물을 의미한다.

인스턴트 차(*instant tea*)는 차의 수분 추출을 통해 만들어진 가용성 건조 고형물을 의미한다.

땅콩 버터(*peanut butter*)는 땅콩을 원료로 한 스프레드를 의미한다.

차(*tea*)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양한 차나무 품종 혹은 변종의 나뭇잎들과 잎눈들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2.10.4-3 차나 커피로 판매되는 식품의 요건

1열에 기재된 제품이라는 전제하에 판매되는 식품은 2열에 대응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차와 커피에 대한 요건

1열	2열
만일 식품이 다음과 같은 전제하에 판매된다면:	해당 식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커피’	커피
‘디카페인 커피’	건조된 기준으로 1g/kg 이하의 무수 카페인을 함유한 디카페인 커피
‘디카페인 인스턴트 커피’ 혹은 ‘디카페인 용해성 커피’	건조된 기준으로 3g/kg 이하의 무수 카페인을 함유한 인스턴트 커피
‘디카페인 인스턴트 차’ 혹은 ‘디카페인 용해성 차’	건조된 기준으로 3g/kg 이하의 무수 카페인을 함유한 인스턴트 차
‘디카페인 차’	건조된 기준으로 4g/kg 이하의 무수 카페인을 함유한 디카페인 차
‘인스턴트 커피’ 혹은 ‘용해성 커피’	인스턴트 커피
‘인스턴트 차’ 혹은 ‘용해성 차’	인스턴트 차

‘차’	차
-----	---

2.10.4-4 땅콩 버터로 판매되는 식품의 요건

‘땅콩 버터’로 판매되는 식품은

- (a) 땅콩 버터; 그리고
- (b) 최소 850g/kg의 땅콩을 함유

2.10.4-5 초콜릿으로 판매되는 식품의 요건

‘초콜릿’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초콜릿이어야 한다.

2.10.4-6 코코아로 판매되는 식품의 요건

‘코코아’로 판매되는 식품은 코코아여야 한다.

2.10.4-7 젤라틴으로 판매되는 식품의 요건

‘젤라틴’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젤라틴이어야 한다.

개정 이력

개정 이력은 기준의 각 개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정보에는 관련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 또는 중단 정보가 포함된다.

이러한 개정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법 1991(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1991)* 섹션 92에 따라 이루어진다. 개정사항에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효력 중단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편집본 정보

본 편집본은 2026년 4월 30일자로 시행된 기준 2.9.1의 편집본 제1호이다(개정번호 249까지). 편집본에는 해당 일자까지 편집본에 영향을 미친 시행 중인 개정사항이 모두 수록된다.

본 편집본은 2026년 4월 30일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에서 작성했다.

미시행 개정사항이나 효력이 중단되는 조항

미시행 개정사항의 효력이나 조항의 효력 중단에 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를 돕기 위해 관련 시행일자나 중단일자와 함께 음영 처리된란에 넣어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호주 연방법령등록부에 등록되는 편집본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거나 생략한 채로 반영되며, 해당 날짜가 지나면 개정 이력에 등재된다.

아래 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ad = 추가 또는 삽입 am = 개정

exp = 만료 또는 시행 중단 rep = 폐지

rs = 폐지 후 대체

기준 2.10.4는 개정안 제154호(F2015L00409 - 2015년 4월 2일)의 일부로 2015년 4월 10일 호주연방관보 제FSC96호에 게재되었으며 개정이력은 다음과 같다.

변경된 섹션	개정 번호	FRLI 등록 관보	발효일자 (중단일자)	개정 결과	개정 내용
2.10.4— 2	249	F2026L00481 2026년 4월 30일 FSC 189 2026년 4월 30일	2026년 4월 30일	rs	서브클러즈 참고 2 폐지 후 대체